

##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

「하동군의회 회의 규칙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하동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. 2. 24.

## 하동군의회 의장 강 대 선

1. 규칙명: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2. 제안이유

- 자문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자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인용된 자치법규명 정비(안 제60조제6항, 제100조제4항)

나. 자문위원 제척 사유 규정 신설(안 제99조의2제1항)

다. 자문위원 기피 신청 및 결정 절차 규정 신설(안 제99조의2제2항)

라. 자문위원 회피 의무 규정 신설(안 제99조의2제3항)

#### 4. 의견제출

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(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유무와 사유, 수정의견)
- 2)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

나. 의견제출 방법

- 1) 팩스: 055-880-2939
- 2) 하동군의회 홈페이지(<http://www.hdcl.go.kr>) 열린마당(의회에 바란다)
- 3) e-mail: uu1028@korea.kr

붙임 1. 규칙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2.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 끝.

## 규칙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규 칙 명: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규칙안 내용(조항)	찬 성 여 부		의 건	비고
	찬성	반대		

##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제6항 중 “「하동군 위원회 실비 조례」”를 “「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”로 한다.

제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9조의2(자문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.

1.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2.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3.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·진술·자문·연구·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4.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
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

제100조제4항 중 “「하동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”를 “「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60조(심사) ① ~ ⑤ (생략)</p> <p>⑥ 제5항에 따라 참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「하동군 위원회 실비 조례」에 따라 수당·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60조(심사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「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-----.</p> <p>제99조의2(자문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</li> <li>2.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</li> <li>3.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·진술·자문·연구·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</li> <li>4.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</li> </ol>

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
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.

제100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등) ① ~ ③ (생략)

④ 자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⑤ (생략)

제100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 
-----  
----- 「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-  
-----  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